

수해복구비의 전액국고보조 지원을 위한 건의문(안)

의안
번호 29

제안년월일 : 1998년 9월 28일
제안자 : 관광건설위원장

1. 주 문

재해복구비의 확정 내시에 따라 일정액의 지방비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인 바 재정력이 취약한 자치단체의 부담을 최소화하여 줄 것을 대통령 비서실장,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장 그리고 중앙 관계부처에 건의하고자 함.

2. 제안이유

- ① 보은군의 경우 80년, 87년, 97년, 98년도에 수해를 입은 상습수해지역으로 전국 222개 시·군·구 중 재정력 지수가 0.12로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고 이번 수해로 인해 지방비의 감소가 예상되는 바, 지방비를 부담시키는 것은 너무 과중하며
- ② 재해구호 및 재해복구비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2항에 의하면 대규모 재해 또는 누적되는 재해의 발생으로 피해가 극심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중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능력으로는 재해복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재해복구비용중의 일부를 국고에서 특별 지원할 수가 있다고 되어 있는 바 보은군의 경우 본 규정을 적용하여야 타당함.

수 신 처 : 대통령비서실장,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장, 재정경제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농림부장관, 건설부장관, 산림청장

수해복구비의 전액 국고보조지원 건의문(안)

건국이래 동족상잔의 비극을 물고온 6.25동란 이후 국가 최대 위기라는 IMF사태를 맞아 빈사상태의 국가 경제를 회생시키고 제 2의 건국을 위해 불철주야 노심초사 하시는 대통령님 그리고 국무총리님과 관계 장관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국민의 정부가 출범한지도 어언 8개월여 짧지않은 기간동안 구조조정이다 퇴출이다 하는 신조어들이 범람하는 속에 지난날 잘못되었던 관행이나 행태들이 고쳐지고 변화하는 개혁의 모습을 사회 곳곳에서 감지할 수가 있고 개혁의 고통이 따르는 만큼 발전된 국가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우리 150만 충청북도민들도 기꺼이 개혁에 동참하고 고통을 함께 나누는데 주저치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님과 현 내각에서도 잘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지난 8월 충북에는 1,000년만에 한 번 올라 말까한다는 국지적인 집중호우가 있었습니다.

이번 호우로 인해 충청북도 보은군을 비롯하여 우리나라 전역에서 크고 작은 수해가 발생하여 인명피해에서부터 삶의 터전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것을 잃고 실의에 잠겨 있는 우리 동포들을 수없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와 국민들이 함께 보내주신 뜨거운 동포애는 이러한 재난쯤이야 하는 용기를 북돋아 주기에 충분하였고, 수해의 아픔을 뒤로하고 힘찬 재기의 삽질을 하는데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나라살림도 어려운데 이번 수해복구비로 원상복구가 아닌 개량복구로 항구적인 대책을 세우도록 배려를하여 주신데 대하여 충북도민을 대신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재해복구비의 추가지원을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보은군은 주기적으로 수해를 입은 상습수해지역입니다.

충청북도 보은군은 지난 80년, 87년, 97년도에도 금번과 같은 수해를 입어 상습 수해지역이라는 오명아닌 오명을 씻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연이 주는 재해이기 때문에 감수해야 한다고 하면 감수하는 수 밖에 없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재정력이 빈약한 상태에서 일정액의 군비를 수해복구비로 부담해야만 하는 보은군의 입장에서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것이며 비록 항구적인 개량복구비로 내시가 되었지만 군비 부담을 할 수 없어 사업에 차질이 생긴다면 이또한 엄청난 예산의 손실과 재해지역 주민들을 실의에 빠지게 할 것입니다.

둘째, 보은군은 재정력이 전국 자치단체중 최하위권입니다.

1998년도 중앙재해대책본부 피해조사 및 재해복구 계획 수립 관련 규정집에 따르면 전국 222개 시·군·구중 보은군의 경우 3년간 재정력 지수가 0.12로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으며 금년의 경우 이번수해로 지방세는 감소되고 재정력 지수는 더욱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셋째, 관련 규정에 의거 특별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재해 구호 및 재해복구비 비용 부담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2항에 의하면 대규모 재해 또는 누적되는 재해의 발생으로 피해

가 극심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중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으로서는 재해 복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재해복구비용중의 일부를 국고에서 특별 지원할 수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보은군의 경우 80년, 87년, 97년, 98년에 이르는 동안 재해가 누적되었고 금년도의 경우 2천여억원이라는 대규모 재해 발생지역으로 본 규정을 적용하여 100% 국고 지원을 해야 한다고 사료되는 바 확정내시된 지원액 외에 추가로 국고를 지원하여 주실 것을 충청북도의회 의원 일동은 150만 충북도민의 뜻을 모아 간곡히 건의 드리는 바입니다.

1998. 9.

충청북도의회 의원 일동